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7.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경규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통지·유해성심사 등에서 발생한 제도 이행·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거·회수 등의 방법·절차도 개선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거나 변경·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 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변경(안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개정)

- 1) 현재 변경등록 결과를 별도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어,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록 등 연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미 발급된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개정
- 2) 변경신고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서 발급없이도 해당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 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개선(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 1)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통지 기간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검토해야 함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수정·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된 시험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위해성 자료 등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안 제16조제2항 개정)**

위해성 자료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는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위해성을 스크린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변경등록에 대한 특례 삭제(부칙 제3조 삭제)

소량 신규화학물질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차.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보완(별표 5 개정)

-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잔량 및 연구성과물 발생 시 사후처리결과는  
제출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개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06. 00.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내에”를 “이내(다만,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일”을 “5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를 “이미 발급한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3일”을 “10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당 변경신고 사항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

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구체적”을 “예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를 “제6조에 따른 등록 여부의 통지 기간 이내에 검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을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두 합의하는”을 “합의하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도 협의체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아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협의체 내에서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당사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수입량이 많은 차순위 당사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해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대표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를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

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하는 장에게 서면으로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대상 위해 우려제품이 판매·증여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에게도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다음”을 “7일 이내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4항까지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공

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58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정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삭제한다.

시행규칙 [별표 5]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의 제2호 다목, 4)와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 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잔량 및 연구성과물 발생 시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처리결과 생략 가능) 등

※ 비교

가)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4)의 사후처리결과는 제출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개발자(연구기관의 변경·추가에 한정)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 서식에서 처리기한은 “7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3일”에서 “20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10일”로 한다.  
 별지 제4호의 서식에서 뒤쪽(두 번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 <처분사항>, <참고사항>을 추가한다.

(뒤 쪽)

<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처분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참고사항 >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7호의 서식에서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를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 ] 비대상 [ ] 사유 :
----------------	------------------------

별지 제8호의 서식에서 처리기한은 “변경신고 7일, 변경등록 7일 또는 1개월”에서 “변경신고 7일, 변경등록 20일 또는 1개월”로 한다.

별지 제9호의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의 서식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를 “(공란) 귀하”로 하고, 처리기관에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의 서식에서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 서식에서 처리기관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본문의 하단,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제5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② (생략)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

통지 등) ① -----

-----

----- 5일 -----

-----

-----

-----

-----

-----

-----

----- 14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미 발급

한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

사항을 적어 -----

-----

-----

-----

-----

1. (현행과 같음)

2. -----

-----

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제11조(변경신고 방법 등) ① (생략)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생략)
2. 시험을 실시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 3.·4. (생략)
5. 시험의 구체적 일정

-----  
-----  
----- 10일.  
-----  
-----  
----- 20일-----.

제11조(변경신고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당 변경신고 사항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2.·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4. ----- 예상 -----

6. (생략)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5.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  
-----  
----- 제6조에 따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 이내에 검토하여야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  
-----.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2. (생략)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  
합의하는 -----  
-----.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도 협의체의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아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협의체 내에서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당사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하거나, 해당 당사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조·수입량이 많은 차순위 당사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해

③ ~ ⑤ (생략)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  
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  
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후  
단 신설>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화  
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  
는 경우, 대표자는 환경부장관  
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체  
의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  
-----  
-----  
-----  
----- 화학물질의 용도, 분  
류 및 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화학물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법 제18조--.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  
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  
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  
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③ (생략)

제4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신 설>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1년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수거·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회수 등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로부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 7. (생략)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한 정도, 명령의 내용, 명령 이행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

해당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하는 장에게 서면으로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명령 대상 위해우려제품이 판매·증여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다)에게도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  
-----  
----- 7일 이내에 다음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

한 자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생략)

한 자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공단의 이사장-----.

1. 2. (현행과 같음)

③ -----  
-----  
----- 공단의 이사장-----  
-----  
-----  
-----  
-----  
-----.

④ -----  
----- 공단의 이사장-----  
-----  
-----  
-----.

⑤ (현행과 같음)

